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31,586,510	9,947,595
일반회계	305,018,278	9,150,548
특별회계	26,568,232	797,047
기타특별회계	26,568,232	797,047
상수도사업	1,775,284	53,259
하수도사업	1,006,712	30,201
수질개선	3,908,468	117,254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12,500	15,375
의료급여기금	603,529	18,106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39,000	16,170
소득특화사업	4,128,079	123,842
농공단지조성사업	217,800	6,534
공영개발사업	2,471,596	74,148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169,954	335,099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235,310	7,05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70,20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